

유기·무농약 재배 종자 사용 적용요령

- 이 자료는 유기·무농약 재배의 종자 사용과 관련된 인증기준과 그 적용요령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, 인증심사 시 관련 규정과 함께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- 법적 근거 :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3(유기농산물 인증기준)·별표11(무농약 농산물 인증기준) 및 「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(농관원 고시)」 별표 1(인증기준) ※ 자료 제공일 : 2020년 3월 16일

1. 유기·무농약 재배 종자(종묘) 인증기준

- 유기재배에 사용되는 종자는 유기 재배 방법으로 키운 식물에서 유래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.
 - ※ 무농약 재배 → 무농약 재배방법으로 생산한 식물에서 유래한 것
- 다만, 위와 같은 종자를 구할 수 없음을 인증기관에 증명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 예외 사항을 순차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.
 - 가) 우선적으로 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(이하 '무처리 종자')의 사용
 - 나)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물질 이외의 물질로 소독한 종자(이하 '일반 종자')
 - ※ 종묘도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, 육묘과정에서 합성농약으로 소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(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음)
- 위 인증기준은 원칙적으로 유기 또는 무농약 재배방법으로 키운 종자를 사용하도록 하되, 이러한 종자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순차적으로 무처리 종자와 일반 종자를 사용하는 예외를 인정합니다.
 - * 적용 순서 : ① 유기종자(무농약) → ② 무처리 종자 → ③ 일반 종자(소독종자)

2. 친환경농업인이 종자를 선택·사용할 때 갖추어야 사항

- 친환경농업은 원칙적으로 유기·무농약 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.
 - 자가 채종이 가능한 품목(곡류, 두류 등)인 경우 인증 받은 재배지에서 채종하여 사용 합니다.
 - 종자 갱신을 위해 보급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하지 않은 무처리 종자를 신청·사용해야 합니다.
- ※ 무처리 종자 공급 품목 : 벼, 보리, 밀, 호밀, 콩, 팥, 감자
- 종자유형, 종자 출처(채종한 곳 또는 구매한 곳)와 수량, 그 사용내용(파종 일자·장소·수량)을 사실대로 기록하고,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.
 - ※ 종자유형(유기·무농약 종자/ 무처리 종자/ 일반 종자)을 명확하게 기재함
- 종자유형에 따른 증명자료를 함께 기록·보관, 제출합니다.
 - 유기·무농약 종자 및 무처리 종자 : 포장재 표시사항, 거래내역서, 공급자 증명서 등에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- 일반 종자 : 유기·무농약·무처리 종자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
- ※ 최소 1개소 이상의 종자 판매업체(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자 구매처를 반드시 포함)에서 사실 확인을 받음

<종자에 대한 기록 예시>

- 자가채종 : 0.0일, 유기 재배지 00번지에서 벼 종자 000kg을 채종함
- 정부 보급종 : 0.0일, 00농협에서 벼 무처리 종자 000kg을 공급 받음
- 일반종자 구매 : 0.0일, 00종묘사에서 상추 일반종자 000kg을 구매함

<일반 종자 사용 증명자료 기재사항 예시>

- 00종묘사(전화번호, 성명)에서는 00품목에 대해 유기·무농약 종자 또는 소독되지 않은 무처리 종자를 보유·판매하고 있지 않음(확인 일자)

※ 판매자가 서명한 자료 또는 농업인이 상담한 자료를 기록함

3. 인증기관이 종자 사용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

- 인증기관은 종자 사용내역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(서류심사, 현장심사) 하고 심사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인증심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사용하는 종자유형, 관련 기록과 증명자료가 있는지, 예외 적용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해 기재합니다.
 - 인증기관은 유기·무농약 종자 사용이 매년 확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심사한 내역과 연계하여 농가의 이행노력을 평가 합니다.
-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인증기준에 부합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.
 - 인증농장에서 자가 채종이 가능한 품목(곡류, 두류 등)인데도 유기·무농약 종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
 - ※ 유기·무농약 종자를 사용하다가 종자 갱신을 목적으로 일정 구역에서 일반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가능함
 - 소독되지 않은 보급종 종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소독된 종자를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
 - 공급받은 종자를 합성농약으로 소독하거나 육묘과정에서 합성농약을 사용하는 경우
 - 제출한 기록 및 증명 자료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
- 대부분의 채소류 품목과 같이 자가 채종이 어렵고 시중에 유기·무농약·무처리 종자가 유통되지 않는 품목은 일반종자의 사용을 인정합니다.
 - 다만,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유기 종자가 등록되어 공급 가능한 품목은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.

4.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어린잎 채소에 적용하는 기준

- 콩나물, 숙주나물, 발아농산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다음의 종자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 - 유기재배 : 유기농산물을 원료(종자)로 사용해야 합니다.
 - 무농약재배 : 무농약농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*(종자)로 사용해야 합니다.
 - * 원료 생산자 단위 또는 6톤 단위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비치 보관 해야 함
 - 어린잎 채소는 다음의 종자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 - 유기재배 : 유기농산물을 종자로 사용해야 합니다. 다만, 토경재배 시에는 소독되지 않은 무처리 종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- 무농약재배 : 무농약농산물 또는 소독되지 않은 무처리 종자를 사용 합니다.
- ※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어린잎 채소는 소독된 종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5. 그 밖에 종자 사용에 관련 기준

- 유기·무농약 재배 시 품목 또는 재배형태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인 혼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배포장, 수확·저장·포장·수송 등 취급과정에서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참고

국내외 종자·묘 관련 기준

□ 국내 기준

○ 「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」

[별표 1] 인증기준의 세부사항

2. 유기농산물

나. 재배포장, 용수, 종자

12) 종자·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두 번의 성장기(무농약은 한 번의 성장기) 동안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증사업자가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종자·묘를 구할 수 없음을 인증기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, 인증기관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.

가) 우선적으로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 또는 묘의 사용

나)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)·2)의 허용물질과 다른 물질로 처리한 종자 또는 묘(육묘 시 유기합성농약이 사용된 경우 제외)의 사용

□ 국제 기준

○ 코덱스(Codex Alimentarius)의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식품의 생산, 가공,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

- *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 Alimentarius Commission)에서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국제식품규격

[부속서1] 유기 생산 원칙

A. 식물 및 식물 제품

8. 종자와 식물생식물질(vegetative reproductive material)은,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 작물의 경우 두 번의 성장기 동안 본 지침 4.1 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한 식물로부터 유래되어야 한다. 사업자가 위 요구를 만족하는 물질이 없다는 것을 공인 인증기관 또는 인정된 인증기관에게 증명할 수 있을 때, 인증기관이나 인정된 인증기관은 다음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.

a) 먼저, 비처리 종자 또는 식물생식물질의 이용, 또는

b) (a)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, 부록 2 에 포함된 것 이외의 물질로 처리한 종자 또는 식물생식물질의 이용